

## 무배당 KDB연금보험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KDB연금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KDB연금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KDB연금보험은 연금 고유기능인 노후생활대비에 중도인출, 추가납입 뿐만 아니라 재정/목적설계에 따른 노후생활자금 그대로를 연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재정설계에 따른 1차 보험료 제시 및 연금개시시점에서의 2차 Re재정설계를 할 수 있는 평생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연금보험입니다.

**Q : 중도인출 가능여부와 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일 또는 월 횟수 제한 없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와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과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중도인출은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해약환급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 후의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 및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은 제외된 금액)이 「해당 중도인출 시점 이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의 합산금액」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은 전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중지를 신청한 경우, 인출 후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기본보험료의 1,000% 해당액과 잔여 특약보험료 총액의 합계액」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⑤ 중도인출 이후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Q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납입중지, 중도인출 등으로 인하여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 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합니다.

**Q : 무배당 KDB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는 무엇인가요?**

A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부터 보험가입시 최초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의 1/2이 지난 이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기본보험료는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특약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만큼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다만, 최초 설정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개시시점까지의 기간이 납입일시중지기간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연금개시나이는 연기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최초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과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⑤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제9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제9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일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⑥ 납입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5회를 한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합니다.
- ⑦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일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⑧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공제액이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⑨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월공제액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하는 최소한의 보험료로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Q :보험료의 납입중지는 무엇인가요?**

A :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0년이상 경과한 계약(약관 제27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따라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최초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의 1/2이 지난 이후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보험료의 납입중지 신청시점의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1. 퇴직
  - 2.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3.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증지를 신청할 때에는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약관 제39조(중도인출) 제4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납입증지 이후에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개인계약, 연금보험, 금리연동형

2.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신 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종신까지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보증지급형, 금액보증형

다만, 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약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의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신 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보증지급형, 금액보증형
확정 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상속 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3.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내 용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 전기납
가입나이	0세 ~ (x-12)세
연금개시나이(x)	45세 ~ 80세
보험료 납입주기	월 납

- 주) 1. 종신연금형 부부형 남자의 경우 연금개시나이는 48세이상 선택가능
- 2. 태아의 경우 가입불가

4. 보험가입한도

구 분		가입한도(보험가입금액)
주계약	1종	1,200만원 ~ 5,880만원 [월납P 20만원 ~ 49만원(만원단위)]
	2종	3,000만원 ~ 60억원 [월납P 50만원 ~ 5,000만원(만원단위)]
	3종	600만원 ~ 2,280만원 [월납P 10만원 ~ 19만원(만원단위)]

※ 3종의 경우 피보험자당 최대 1구좌 한도 가입 가능함

5.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KDB연금보험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 무배당 KDB연금보험(1종, 2종, 3종)

제도성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1). 보험기간 구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 또는 확정연금 지급기간까지

(2).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1종

(기준: 1구좌)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주)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리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2종

(기준: 1구좌)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500만원

- (주)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리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3종

(기준: 1구좌)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만원

- (주)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리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 지급 형태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종신연금형	개인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보증지급형	
	부부형	주피보험자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보증지급형
		종피보험자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증지급기간 이후 주피보험자 연금지급 해당액의 (50%, 70%, 100%)지급
	금액보증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지급된 연금 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지급개시시계약자적립액 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금 없음)	

다만,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의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연금 지급 형태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일시급여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의 0%~ 50% 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5%단위 선택)	
종신연금형	개인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일시급여금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보증지급형	
	부부형	주피보험자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일시급여금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보증지급형
		종피보험자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증지급기간 이후 주피보험자 연금지급 해당액의 (50%, 70%, 100%)지급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일시급 여금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 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 계 약자적립액(일시급여금 선택비율 해 당액을 제외한 금액)과 이미 지급된 연금 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 급(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지급 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일시급여금 선 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 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금 없음)
	금액보증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확정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 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일시급 여금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 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 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상속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일시급 여금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 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 급(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 점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 (주) 1.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종신연금형(개인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피보험자, 종신연금형(부부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연금지급기간 종료 등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중 5. 기타 용어의 정의 차. 계약자적립액」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3. 계약자는 연금지급형태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Ⅳ)가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 됩니다.
5. 종신연금형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6. 종신연금형의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5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8.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확정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10.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공시이율(연금Ⅳ)을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 11.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12.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1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4.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예시

가.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사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우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

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료 산출기초

1. 보장부분 적용이율

Q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KDB연금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2.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KDB연금보험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sup>(1)</sup>와 운용자산이익률<sup>(2)</sup>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신공시이율(연금Ⅳ)」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25.01월 현재 공시이율은 연복리 2.00%이며, 「신공시이율(연금Ⅳ)」<sup>(3)</sup>가 변동될 경우 무배당 KDB연금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국고채/회사채/통화안정증권/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
- (2) 운용자산이익률: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 (3) 「신공시이율(연금Ⅳ)」은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KDB연금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해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신공시이율(연금Ⅳ)에 따라 적립되며 신공시이율(연금Ⅳ)이 0.4%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신공시이율(연금Ⅳ)(0.4%)가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 후 10

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연복리 0.5%)로 적용됩니다.

**4.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구 분		20세	40세	60세
80%이상 재해장해 발생률	남 자	0.000016	0.000014	0.000074
	여 자	0.000005	0.000003	0.000021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구 분		50세	60세	70세
개인연금사망률 (40세 가입시)	남 자	0.000760	0.001270	0.002710
	여 자	0.000420	0.000480	0.001020

**5.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KDB연금보험은 무배당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우리 KDB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 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습니다.

2.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 예시

가. 1종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40세 가입(남자/여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단위: 원)

구분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신공시이율(연금Ⅳ)(2.0%)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3개월	900,000	105,721	11.7%	826,043	91.8%
6개월	1,800,000	962,542	53.5%	1,656,185	92.0%
9개월	2,700,000	1,823,483	67.5%	2,490,447	92.2%
1년	3,600,000	2,688,564	74.7%	3,328,849	92.5%
2년	7,200,000	6,190,704	86.0%	6,724,276	93.4%
3년	10,800,000	9,760,753	90.4%	10,187,610	94.3%
4년	14,400,000	13,400,069	93.1%	13,720,212	95.3%
5년	18,000,000	17,110,037	95.1%	17,323,465	96.2%
6년	21,600,000	20,892,070	96.7%	20,998,784	97.2%
7년	25,200,000	24,747,609	98.2%	24,747,609	98.2%
8년	28,800,000	28,650,738	99.5%	28,650,738	99.5%
9년	32,400,000	32,631,929	100.7%	32,631,929	100.7%
10년	36,000,000	36,692,745	101.9%	36,692,745	101.9%
15년	36,000,000	40,259,263	111.8%	40,259,263	111.8%
20년	36,000,000	44,196,988	122.8%	44,196,988	122.8%

구분 경과 기간	평균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연금Ⅳ) 중 낮은 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3개월	105,721	11.7%	826,043	91.8%	104,365	11.6%	824,687	91.6%
6개월	962,542	53.5%	1,656,185	92.0%	957,785	53.2%	1,651,427	91.7%
9개월	1,823,483	67.5%	2,490,447	92.2%	1,813,263	67.2%	2,480,227	91.9%
1년	2,688,564	74.7%	3,328,849	92.5%	2,670,806	74.2%	3,311,091	92.0%
2년	6,190,704	86.0%	6,724,276	93.4%	6,121,722	85.0%	6,655,294	92.4%
3년	9,760,753	90.4%	10,187,610	94.3%	9,606,081	88.9%	10,032,938	92.9%
4년	13,400,069	93.1%	13,720,212	95.3%	13,124,216	91.1%	13,444,359	93.4%
5년	17,110,037	95.1%	17,323,465	96.2%	16,676,466	92.6%	16,889,894	93.8%
6년	20,892,070	96.7%	20,998,784	97.2%	20,263,170	93.8%	20,369,885	94.3%
7년	24,747,609	98.2%	24,747,609	98.2%	23,884,675	94.8%	23,884,675	94.8%
8년	28,650,738	99.5%	28,650,738	99.5%	27,513,518	95.5%	27,513,518	95.5%
9년	32,631,929	100.7%	32,631,929	100.7%	31,178,649	96.2%	31,178,649	96.2%
10년	36,692,745	101.9%	36,692,745	101.9%	34,880,431	96.9%	34,880,431	96.9%
15년	40,259,263	111.8%	40,259,263	111.8%	35,518,138	98.7%	35,518,138	98.7%
20년	44,196,988	122.8%	44,196,988	122.8%	36,171,947	100.5%	36,171,947	100.5%

나. 2종

(기준: 기본보험료 50만원, 40세 가입(남자/여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단위: 원)

구분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신공시이율(연금Ⅳ)(2.0%)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3개월	1,500,000	0	0.0%	1,376,738	91.8%
6개월	3,000,000	1,218,879	40.6%	2,760,308	92.0%
9개월	4,500,000	2,668,602	59.3%	4,150,745	92.2%
1년	6,000,000	4,125,225	68.8%	5,548,082	92.5%
2년	12,000,000	10,021,412	83.5%	11,207,126	93.4%
3년	18,000,000	16,030,779	89.1%	16,979,350	94.3%
4년	24,000,000	22,155,591	92.3%	22,867,020	95.3%
5년	30,000,000	28,398,156	94.7%	28,872,442	96.2%
6년	36,000,000	34,760,830	96.6%	34,997,973	97.2%
7년	42,000,000	41,246,015	98.2%	41,246,015	98.2%
8년	48,000,000	47,794,896	99.6%	47,794,896	99.6%
9년	54,000,000	54,474,756	100.9%	54,474,756	100.9%
10년	60,000,000	61,288,212	102.1%	61,288,212	102.1%
15년	60,000,000	67,414,647	112.4%	67,414,647	112.4%
20년	60,000,000	74,178,725	123.6%	74,178,725	123.6%

구분 경과 기간	평균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연금Ⅳ) 중 낮은 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3개월	0	0.0%	1,376,738	91.8%	0	0.0%	1,374,478	91.6%
6개월	1,218,879	40.6%	2,760,308	92.0%	1,210,950	40.4%	2,752,379	91.7%
9개월	2,668,602	59.3%	4,150,745	92.2%	2,651,569	58.9%	4,133,712	91.9%
1년	4,125,225	68.8%	5,548,082	92.5%	4,095,629	68.3%	5,518,486	92.0%
2년	10,021,412	83.5%	11,207,126	93.4%	9,906,442	82.6%	11,092,156	92.4%
3년	16,030,779	89.1%	16,979,350	94.3%	15,772,992	87.6%	16,721,564	92.9%
4년	22,155,591	92.3%	22,867,020	95.3%	21,695,837	90.4%	22,407,265	93.4%
5년	28,398,156	94.7%	28,872,442	96.2%	27,675,538	92.3%	28,149,824	93.8%
6년	34,760,830	96.6%	34,997,973	97.2%	33,712,665	93.6%	33,949,808	94.3%
7년	41,246,015	98.2%	41,246,015	98.2%	39,807,792	94.8%	39,807,792	94.8%
8년	47,794,896	99.6%	47,794,896	99.6%	45,899,296	95.6%	45,899,296	95.6%
9년	54,474,756	100.9%	54,474,756	100.9%	52,051,716	96.4%	52,051,716	96.4%
10년	61,288,212	102.1%	61,288,212	102.1%	58,265,660	97.1%	58,265,660	97.1%
15년	67,414,647	112.4%	67,414,647	112.4%	59,493,873	99.2%	59,493,873	99.2%
20년	74,178,725	123.6%	74,178,725	123.6%	60,753,100	101.3%	60,753,100	101.3%

(기준: 기본보험료 10만원, 40세 가입(남자/여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단위: 원)

구분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신공시이율(연금Ⅳ)(2.0%)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3개월	300,000	89,270	29.8%	275,378	91.8%
6개월	600,000	372,908	62.2%	552,122	92.0%
9개월	900,000	657,918	73.1%	830,240	92.2%
1년	1,200,000	944,309	78.7%	1,109,738	92.5%
2년	2,400,000	2,103,813	87.7%	2,241,670	93.4%
3년	3,600,000	3,285,956	91.3%	3,396,241	94.3%
4년	4,800,000	4,491,190	93.6%	4,573,904	95.3%
5년	6,000,000	5,719,977	95.3%	5,775,120	96.3%
6년	7,200,000	6,972,788	96.8%	7,000,360	97.2%
7년	8,400,000	8,250,105	98.2%	8,250,105	98.2%
8년	9,600,000	9,545,465	99.4%	9,545,465	99.4%
9년	10,800,000	10,866,732	100.6%	10,866,732	100.6%
10년	12,000,000	12,214,425	101.8%	12,214,425	101.8%
15년	12,000,000	13,233,220	110.3%	13,233,220	110.3%
20년	12,000,000	14,358,052	119.7%	14,358,052	119.7%

구분 경과 기간	평균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연금Ⅳ) 중 낮은 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3개월	89,270	29.8%	275,378	91.8%	88,818	29.6%	274,926	91.6%
6개월	372,908	62.2%	552,122	92.0%	371,322	61.9%	550,536	91.8%
9개월	657,918	73.1%	830,240	92.2%	654,511	72.7%	826,833	91.9%
1년	944,309	78.7%	1,109,738	92.5%	938,389	78.2%	1,103,818	92.0%
2년	2,103,813	87.7%	2,241,670	93.4%	2,080,817	86.7%	2,218,674	92.4%
3년	3,285,956	91.3%	3,396,241	94.3%	3,234,393	89.8%	3,344,678	92.9%
4년	4,491,190	93.6%	4,573,904	95.3%	4,399,229	91.7%	4,481,943	93.4%
5년	5,719,977	95.3%	5,775,120	96.3%	5,575,437	92.9%	5,630,580	93.8%
6년	6,972,788	96.8%	7,000,360	97.2%	6,763,132	93.9%	6,790,704	94.3%
7년	8,250,105	98.2%	8,250,105	98.2%	7,962,429	94.8%	7,962,429	94.8%
8년	9,545,465	99.4%	9,545,465	99.4%	9,166,381	95.5%	9,166,381	95.5%
9년	10,866,732	100.6%	10,866,732	100.6%	10,382,373	96.1%	10,382,373	96.1%
10년	12,214,425	101.8%	12,214,425	101.8%	11,610,525	96.8%	11,610,525	96.8%
15년	13,233,220	110.3%	13,233,220	110.3%	11,660,637	97.2%	11,660,637	97.2%
20년	14,358,052	119.7%	14,358,052	119.7%	12,001,000	100.0%	11,712,015	97.6%

※ 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미상

각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5년)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5.01월)의 신공시이율(연금Ⅳ) 2.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관련세법에 의한 세금공제 전 기준입니다.(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만 공시이율로 적립됩니다.
- ※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 보증: 연금지급개시시까지 유지시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과 관계없이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1,000원」 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1,000원」으로 합니다.
- ※ 실제 해약환급금은 신공시이율(연금Ⅳ)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향후 신공시이율(연금Ⅳ) 변동시 또는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여부에 따라 실제 해약환급금이 변동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모집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b>모집수수료란?</b>
모집수수료란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

1. 1종

(기준 :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30만원, 전기납, 월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합계
모집수수료율	0.69%	0.25%	0.10%	0.00%	1.04%

- ※ 1년~4년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2종

(기준 :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50만원, 전기납, 월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합계
모집수수료율	0.69%	0.25%	0.10%	0.00%	1.04%

- ※ 1년~4년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3종

(기준 :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10만원, 전기납, 월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합계
모집수수료율	0.52%	0.19%	0.07%	0.00%	0.78%

- ※ 1년~4년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가. 1종

(기준 :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30만원)

경과기간	1~7년	8년~10년	11년~20년
보험관계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8.52% (25,560원)	기본보험료의 6.34% (19,020원)	기본보험료의 1.33% (4,000원)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 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4.52% (13,560원) - 7년 초과 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2.34% (7,02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4.00% ~ 4.00% (11,988원 ~ 11,988원) - 납입기간이후: 기본보험료의 1.32% ~ 1.32% (3,968원 ~ 3,968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40%~0.0107%(12원~32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확정연금형 : 연금연액의 0.5% 확정연금형 이외 : 연금연액의 0.9%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해약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만원)	65	54	43	33	22	11	0	0
해약공제비율	17.8%	7.5%	4.0%	2.3%	1.2%	0.5%	0.0%	0.0%

주) 해약공제비율 = 해약공제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나. 2종

(기준 :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50만원)

경과기간	1~7년	8년~10년	11년~20년
보험관계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8.52% (42,600원)	기본보험료의 5.62% (28,100원)	기본보험료의 0.80% (4,000원)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 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6.02% (30,100원) - 7년 초과 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3.12% (15,6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2.50% ~ 2.50% (12,483원 ~ 12,483원) -납입기간이후: 기본보험료의 0.79% ~ 0.79% (3,952원 ~ 3,953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34%~0.0096%(17원~48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연 금 수령시	확정연금형 : 연금연액의 0.5% 확정연금형 이외 : 연금연액의 0.9%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해약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만원)	143	119	95	72	48	24	0	0
해약공제비율	23.8%	9.9%	5.3%	3.0%	1.6%	0.7%	0.0%	0.0%

주) 해약공제비율 = 해약공제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다. 3종

(기준 :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10만원)

경과기간	1~7년	8년~10년	11년~20년
보험관계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8.51% (8,510원)	기본보험료의 6.81% (6,810원)	기본보험료의 4.00% (4,000원)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 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3.51% (3,510원) - 7년 초과 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1.81% (1,81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4.99% ~ 4.99% (4,994원 ~ 4,994원)

			-납입기간이후: 기본보험료의 3.98% ~ 3.98% (3,984원 ~ 3,984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60%~0.0160%(6원~16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연 금 수령시	확정연금형 : 연금연액의 0.5% 확정연금형 이외 : 연금연액의 0.9%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해약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만원)	17	14	12	9	6	3	0	0
해약공제비율	13.8%	5.8%	3.1%	1.8%	1.0%	0.4%	0.0%	0.0%

주) 해약공제비율 = 해약공제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추가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보험료의 2.5% 누적중도인출금액이내 Min(추가보험료의 0.5%, 10,000원)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없음